

여신거래 채무인수 약정서 공시사항

1. 기본사항

제정일	개정시행일	판매종료여부(종료일)	기존고객적용여부
2019.04.05	2020.03.26	○ (22.01.01)	○

2. 개정대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2			

3. 담당부서명 : 여신심사관리부

채무인수 약정서

KBC 케이뱅크

은행은 약정관계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객 번호 :

20 년 월 일

수입 인지

채권자 : 주식회사 중국공상은행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1층, 16층, 18층	(인)
채무자 :	(인)
주 소 :	(인)
채무인수인 :	(인)
주 소 :	(인)
근저당권설정자(소유권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 :	(인)
주 소 :	(인)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 :	(인)
주 소 :	(인)
연대보증인 :	(인)
주 소 :	(인)
연대보증인 :	(인)
주 소 :	(인)

■ 제1조 채무의 인수

① 채무인수인은 채무자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아래 표시의 약정서(이하 "원약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그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할 것을 청약하고 채무자 및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 원약정서상의 채무표시 (년 월 일 현재)

채무구분	1	2	3	4	5
원약정서	·	·	·	·	·
채무자					
채무액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부대채무 합계				

②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이하 "담보제공자"라 한다) 및 연대보증인은 제1항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 제2조 채무자 및 채무인수의 지위

채무자 및 채무인수인은 제1조의 채무에 대하여

의 지위를 가진다.

□ 면책적인수형

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여 채무이행의무를 면하고, 채무인수인은 인수한 채무를 원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중첩적인수형

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채무인수인은 인수한 채무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원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제3조 담보, 보증의 유지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인은 아래 표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보증계약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는 데 동의합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표시

구분	1	2	3	4	5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일자	· · ·	· · ·	· · ·	· · ·	· · ·
접수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채권최고액					
물건목록	· · ·	· · ·	· · ·	· · ·	· · ·
순위번호	· · ·	· · ·	· · ·	· · ·	· · ·

채무인수 약정서

Section 1: The Building

은행은 약정관계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분야과과 이 약정서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객포함:

20 월일

수입 인지	채권자 : 주식회사 중국공상은행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1층, 16층, 18층 (인)
	채무자 : 주소 : (인)
	채무인수인 : 주소 : (인)
	근저당권설정자(소유권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 : 주소 : (인)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 : 주소 : (인)
	연대보증인 : 주소 : (인)
	연대보증인 : 주소 : (인)

■ 제1조 채무의 인수

- ① 채무인수인은 채무자가 은행에 신거래 기본약관 및 아래 표시의 약정서(이하 "원악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그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할 것을 청의하고 채무자 및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 원약정서상의 채무표시 (

월 일 혁재)

채무구분	1	2	3	4	5
원약정서	약정서	약정서	약정서	약정서	약정서
채무자					
채무액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부대채무				
	합계				

- ②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이하 "담보제공자"라 한다) 및 연대보증인은 제1항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 제2조 채무자 및 채무인수의 지위

채무자 및 채무인수인은 제1조의 채무에 대하여

이 지의를 가지다

□ 면책적인수령

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여 채무이행의무를 면하고 채무의수익을 이수한 챈드를 위하여 저서의 가 조항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 중처저이스허

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채무이수인은 이수한 챈무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원인점에서 간접함에 따라 이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3조 단부 보증이 유통

단부제공자의 대여보증이 아래 표시 균형단위설정계약 및 보증계약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임수인은 일정한 기간을 하루 또는 그 이상으로

3. 그린다리설계안이 표 11

구분	1	2	3	4	5
등기 등록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채권최고액				
	물건목록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순위번호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보증계약의 표시

구분	1	2	3	4	5
계약일자	접수일자
약정서 또는 보증서※					

※ 약정서 또는 보증서란은 여신(대출)거래약정서 또는 보증서의 종류(특정채무보증계약서, 특정, 한정, 포괄근보증계약서)를 기재합니다.

■ 제4조 변경등기, 등록 기타의 대항요건

이 약정 당사자는 제3조의 담보, 보증에 관하여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인수로 말미암은 변경등기, 등록기타 대항요건구비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제4조에 의한 변경등기, 등록, 대항요건 구비 등이 이 약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 약정을 해제한 때에는 원약정서에 의한 채무와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와 책임은 원래대로 복귀합니다.

■ 제6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③ 채권자는 제2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가.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기타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④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제7조 특약사항

채 무 자	(인)
채무인수인	(인)
담보제공자	(인)
담보제공자	(인)
연대보증인	(인)
연대보증인	(인)

□ 물건목록 및 순위번호

물건 목록	순위번호	
	등기상순위	실제순위

채 무 자	(인)
채무인수인	(인)
담보제공자	(인)
담보제공자	(인)
연대보증인	(인)
연대보증인	(인)

□ 보증계약의 표시

구분	1	2	3	4	5
계약일자
접수일자
약정서 또는 보증서※					

※ 약정서 또는 보증서란은 여신(대출)거래약정서 또는 보증서의 종류(특정채무보증계약서, 특정, 한정, 포괄근보증계약서)를 기재합니다.

■ 제4조 변경등기, 등록 기타의 대항요건

이 약정 당시자는 제3조의 담보, 보증에 관하여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인수로 말미암은 변경등기, 등록기타 대항요건구비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제4조에 의한 변경등기, 등록, 대항요건 구비 등이 이 약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 약정을 해제한 때에는 원약정서에 의한 채무와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와 책임은 원래대로 복귀합니다.

■ 제6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③ 채권자는 제2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가.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기타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④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제7조 특약사항

	채 무 자	(인)
	채무인수인	(인)
	담보제공자	(인)
	담보제공자	(인)
	연대보증인	(인)
	연대보증인	(인)

□ 물건목록 및 순위번호

물건 목록	순위번호	
	등기상순위	실제순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였습니다.	채 무 자	(인)
	채무인수인	(인)
	담보제공자	(인)
	담보제공자	(인)
	연대보증인	(인)
	연대보증인	(인)

